

의안번호	제 1022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2년 3월 16일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3월 16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의 감염 등에 대비
-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시 보임, 신분상실, 해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기간 중 결원시 보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제5항)
 -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 결원 시,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 보임 후 다음 회기 본회의 승인 받아야 함
- 결산검사 위원회 신분상실, 해임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2)
 - 신분 상실 사유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해임 사유
 -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 -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신분상실)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2.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.

- 1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- 2.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·③·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·③·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검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 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의2(신분상실) ① <u>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감사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</u></p> <p><u>2.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.</u></p> <p><u>1.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</u></p> <p><u>2.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</u></p>

관계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73조(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-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